

#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(김용석(도봉)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11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7년 10월 16일

발 의 자 : 김용석(도봉)·서윤기·이순자  
문영민·김광수(도봉)·김기대  
김창수·김혜련·박기열  
이윤희·우창윤·이숙자  
김제리 의원(13명)

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가. 행정안전부 발굴 순화대상 용어의 정비를 위한 조문 개정

(안 제2조 외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.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##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함으로써 자치법규 접근성을 개선하고,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지하공공보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공개공지”를 “공개공지(空地: 공터)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내측간격”을 “안쪽간격”으로 한다.

**제3조(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이상인 물건적치”를 “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”으로 한다.

제46조제2항 중 “전면부”를 “앞면부”로 한다.

**제4조(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오수”를 “오수(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 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. 이하 같다)”로 한다.

제26조제4항 중 “적치하거나”를 “쌓아 두거나”로 한다.

**제5조(서울특별시 수도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0조제5항 중 “적치하거나”를 “쌓아 두거나”로 한다.

**제6조(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적치하거나”를 “쌓아 두거나”로 한다.

제36조제3항 중 “적치하거나”를 “쌓아 두거나”로 한다.

**제7조(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제1호 중 “적치하거나”를 “쌓아 두거나”로 한다.

**제8조(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가목(1) 중 “공개공지계획”을 “공개공지(空地: 공터)계획”으로 한다.

**제9조(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5호 중 “공지기준”을 “공지(空地: 공터)기준”으로 한다.

제7조제2항제3호 중 “공개공지·조경”을 “공개공지(空地: 공터)·조경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2항제1호 중 “공지”를 “공지(空地: 공터)”로 한다.

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공개공지 또는”을 “공개공지(空地: 공터) 또는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호 중 “하천·구거부지”를 “하천·구거(도랑)부지”로 한다.

**제10조(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건축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공지”를 각각 “공지(空地: 공터)”로 한다.

**제11조(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·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제3호 중 “동등”을 “동등한 수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6항제3호 중 “동등”을 “동등한 수준”으로 한다.

**제12조(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제2호 중 “폐도·폐구거·폐제방”을 “폐도·폐구거(폐도랑)·폐제방”으로 한다.

**제13조(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“정온”을 각각 “평온”으로 한다.

**제14조(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 중 “자동심장제세동기”를 “자동심장충격기”로 한다.

**제15조(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의 개정)**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구배”를 “기울기”로 한다.

별표 1의 “구배”를 각각 “기울기”로 한다.

제16조(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)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 중 ““자동제세동기”(자동심장충격기)란”을 ““자동심장충격기”란”으로 한다.

### 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